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3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임종국, 김달호, 권영희,
김제리, 홍성룡, 장상기,
김경우, 여 명, 김화숙,
김정태, 권수정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출 연 금: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기금전출금

가. 공사관련 기금전출금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기금전출금

3. 주민지원계정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기금전출금을 추가하여 전출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기금전출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전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전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금의 조성) ① (생략)</p> <p>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u>출연금</u></p> <p>가. 공사관련 <u>출연금</u></p> <p>나. ~ 라. (생략)</p> <p>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u>출연금</u></p> <p>3. (생략)</p> <p>4. 다른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u>출연금</u>을 추가하여 <u>출연</u>할 수 있다.</p>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u>출연금</u>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u>출연</u>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u>출연</u>한다.</p>	<p>제2조(자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p>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u>기금전출금</u></p> <p>가. 공사관련 <u>기금전출금</u></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u>기금전출금</u></p> <p>3. (현행과 같음)</p> <p>4. 다른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u>기금전출금</u>을 추가하여 <u>전출</u>할 수 있다.</p>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u>기금전출금</u>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u>전출</u>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u>전출</u>한다.</p>